

#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199 |
|----------|-----|

제출년월일 : '96.10.16

제 출 자 : 파주시장

## ☐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제63조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을 적립 운영하여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등에 관한 소요자원으로 활용하여 파주시민의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고자함.

## ☐ 주요내용

가. 재해대책기금의 조성------(안 제2조)

- 전 3년간에있어서의 지방세법에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천분8에 해당하는 금액
- 기금의 운용 수입
- 기타 잡수입등

나.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3조)

- 조성금총액의 100분의50이상을 국채또는 공채의 매입 또는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예탁관리
- 잔액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활용

다. 재해대책기금의 용도------(안 제4조)

- 재해사전대비점검결과 시급히보수·정비를 요하는사업
-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 재해예방이나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라.결산 및 보고 ------(안 제 7조)

- 기금운용관은 다음회계년도3월말까지 시장에게보고
-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

☐ 조례(안) : 불 임

☐ 관계법령발체 : 불 임

☐ 예산수반 사항

▷ '97년 당초예산 166,167천원(일억육천육백일십육만칠천원)

##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법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설도시국장
2. 기금출납원 : 방재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  
야한다.

②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재해대책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4조(재해대책기금의 운용 등) ①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재해예방 등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전액 재해대책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해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재해대책기금의 용도)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예방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재해사전대비점검결과 시급히보수·정비를 요하는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59조(재해대책기금의운용·관리) ①법제64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따로 계좌를 설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여야한다.

②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